

2012.8.2 시행 의료법 [법률 제11252호, 2012.2.1, 일부개정]

1. 주요 개정골자

- 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제4조). 환자의 권리 등 게시 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92조제3항제6호).
- 나.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에 관한 의료법 제21조제2항 중 제14호(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신설(제21조제2항제14호).
- 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8항)
- 라. 의료기관이 설치·활용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제38조).
- 마.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라도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66조).

2. 개정 대비표

舊 의료법	2012. 8. 2 시행 의료법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생략) <신 설> <신 설>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u> ③ <u>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u>

※ 부칙 <법률 제11252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2017년 시행 관계로 위 대비표에서 제외함)

제2조(국가시험 응시 자격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평가인증기구가 해당 과목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를 실시하여 해당 과목의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된 이후에 해당 과목의 대학, 전문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별 인증 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5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행정처분의 감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舊 의료법	2012. 8. 5 시행 의료법
<p>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u>감염대책위원회</u>를 설치·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u>감염대책위원회</u>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57조(광고의 심의) 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u>의료광고를 하려면</u>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②·③ (생략)</p> <p>④ 제1항에 따른 <u>심의의 대상과 기준</u>, 그 밖에 <u>심의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u>증표를 지니고</u>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u>보고에</u>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p>	<p>기관의 장-----<u>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p> <p>② -----<u>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u>은-----.</p> <p>제57조(광고의 심의)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u>-----.</p> <p>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p> <p>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p> <p>3. 전광판</p> <p>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p> <p>②·③ (현행과 같음)</p> <p>④ -----<u>심의 기준·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심의 업무의 위탁 등 의료광고의 심의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p> <p>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 -----<u>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u>-----.</p> <p>② -----<u>증표 및 조사기간·조사범위·조사담당자·관련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u>-----.</p> <p>③ -----<u>보고 및 제2항의 조사명령서</u>-----.</p> <p>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p>

舊 의료법	2012. 8. 5 시행 의료법
<p>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p> <p>3.~8. (생략)</p> <p>② (생략)</p> <p>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p> <p>1.~4. (생략)</p> <p>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받은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p> <p>6.·7. (생략)</p> <p>8.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때</p> <p>9.·10. (생략)</p> <p>②~④ (생략)</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u>-----</p> <p>-----</p> <p>3.~8.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6조(자격정지 등) ① -----</p> <p>-----</p> <p>-----</p> <p>-----</p> <p>1.~4. (현행과 같음)</p> <p>5. -----</p> <p>-----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p> <p>6.·7.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9.·10. (현행과 같음)</p> <p>②~④ (현행과 같음)</p>

※ 부칙 <법률 제11005호, 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고심의에 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개정규정의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격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이하 생략)

3. 개정 의료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시행 사항

1) 2012. 8. 5. 시행 의료법시행령

舊 의료법시행령	2012. 8. 5 시행 의료법시행령
<p>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법 제56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6. 의료행위나 진료 방법 등을 광고하면서 예견할 수 있는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u>빠뜨리고</u> 광고하는 것</p> <p>7. ~ 9. (생략)</p> <p>② (생략)</p> <p>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u>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u></p> <p>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인터넷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p> <p>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벽보 및 <u>전단</u></p> <p><u><신 설></u></p> <p><u><신 설></u></p> <p>②·③ (생략)</p>	<p>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 <u>빠뜨</u> <u>리거나 글씨 크기를 작게 하는 등의 방법</u> <u>으로 눈에 잘 띄지 않게</u> -----</p> <p>7. ~ 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대상 및 심의 업무의 위탁) ① <u>법 제5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말한다.</u></p> <p>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p> <p>2.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p> <p>3.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서비스로 하여 ‘방송’, ‘TV’ 또는 ‘라디오’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인터넷 매체</p> <p>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p> <p>②·③ (현행과 같음)</p>

2) 2012. 8. 5. 시행 의료법시행규칙

舊 의료법시행령	2012. 8. 5 시행 의료법시행규칙
<p>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②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p> <p>1. ~ 5. (생략)</p> <p>6. 병발증(並發症)의 발생 가능 여부</p> <p>7. ~ 9. (생략)</p> <p>③·④ (생략)</p> <p>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1. ~ 6. (생략)</p> <p><신설></p>	<p>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① ----- ----- <u>진단서</u>에는 <u>별지 제5호의2서식</u>에 따라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 ----- <u>별지 제5호의3서식</u>에 따라 <u>제1항</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합병증</u>-----</p> <p>7. ~ 9.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제6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u></p>

※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양식은 별도자료 참조

진 단 서

등록번호
연 번호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주소	(전화번호 :)		
질 병 명 []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주상병) (부상병)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발병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연월일	년 월 일
치료 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용 도			
비 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주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의료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질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에 체크(√)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를 기입합니다.

상 해 진 단 서

등록번호
연 번 호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자의 주소	(전화번호 :)	
질 병 명 [] 임상적 추정 [] 최종 진단	(주상병) (부상병)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발병 또는 상해 연월일	년 월 일	진단 연월일 년 월 일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상해 부위와 정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의 발생 가능 여부		
통상활동의 가능 여부		
식사의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		
치 료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진단일부터 일간)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비 고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진단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주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성 명: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환자의 인적사항은 진찰한 의사가 주민등록증,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공립대학 학생증, 군무원증, 의료보험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공인 신분증(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학생증 등으로 대체 가능)과 대조하여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2. “질병명”란에는 “임상적 추정”과 “최종진단” 중 택일하여 []에 체크(√) 표시를 하고, 질병명은 한글로 적되, 영어로 적을 경우에는 한글을 함께 적으며, 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를 기입합니다.